

『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5월 25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일방 통행적 업무추진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,
- 나. 시의회와의 소통과 공감 형성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기능 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에 한하여 출석·답변이 가능하였던 공사·공단 임원과 출자·출연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도 출석·답변이 가능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(안 제22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03, 팩스 032-440-8762, 이메일 jinpan55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다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: 별첨

라. 비용추계서 : 미첨부(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”를 “의회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 1.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	제22조(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의회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○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) ○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○ 제71조(회의규칙) ○ 제146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) ☐ 지방공기업법 ○ 제73조(감독 등) 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○ 제73조(시장·교육감 등의 출석 요구) ☐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○ 제9조(임원) “세부사항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6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제73조(감독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.

※ 공단은 본 조항 준용(제76조)

□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73조(시장·교육감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에 관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시장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9조(임원)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